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서울보증보험㈜

2. 제재조치일 : 2023. 11. 20.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경영유의 3건, 개선사항 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자산운용 관련 조직운영 체계 강화 필요

서울보증보험㈜(이하 '회사')는 자산운용본부 산하에 자산운용부(Front office)와 자산운용기획부(Middle·Back office)를 배치하고 자산운용·심사·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투자자산 심사를 담당하는 별도 조직을 두지 않고 자산운용기획부* 실무자 2명이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심사담당 인력과 운용담당 인력이 동일한 본부에 소속되어 동일한 임원(자산운용본부장)의 관리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자산운용전략 수립, 성과분석, 대내외보고, 자산 심사·관리, 회계 등 업무 수행

한편, 자산운용기획부 내에 대체투자 전담인력을 별도로 두지 않고 일반투자와 대체투자 자산 관련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어 고위험 대체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통제가 미흡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산운용·심사·사후관리조직이 독립성 및 상호견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조직 및 업무분장 등을 정비하고, 대체투자 전담인력 배치 및 전담조직 신설을 검토하는 등 자산운용 관련 조직운영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대체투자 사전심사 업무 강화 필요

회사는 내규「대체투자운용기준」에 따라 대체투자 상품 투자시 체크리스트를 통해 투자상품에 대한 리스크 등을 사전 점검하고, 투자전략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행하고 있으나

대체투자 계량평가 기준에 투자가능 상품군 중 일부만을 반영*하거나 동 기준 각 평가항목의 최저점수가 높게 설정되어 있어 투자 최저기준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등 평가기준이 면밀하지 않고

* 심의기준 유형의 종류가 내규에서 정한 투자가능 대체투자 상품 종류보다 적음

투자전략심의위원회 의사록에 참석 위원들의 개별 발언내용을 기록하지 않아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에 대한 근거 확보가 미흡하므로

투자가능 상품군 전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대체투자 계량평가 기준을 정비하고, 투자에 대한 실질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투자최저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한편, 투자전략심의위원회 의사록에 참석위원 발언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체투자 사전 심사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환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회사는 매년 파생금융거래방안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부의하여 승인받고 있으나 이를 별도 안건으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자본배분 및 리스크 허용한도 설정' 안건에 포함하여 부의하는 등 자산부채관리방침, 위험감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파생금융전략으로서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 헤지목적과 매매목적을 구분하여 거래목적, 위험회피 대상 및 수단 등 원론적인 내용만 기술

단기 환헤지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도 개별 현물자산과 헤지파생상품을 동시에 고려한 헤지비율·환손익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지 않는 등 환리스크 관리가 미흡하므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환헤지 등을 포함한 실질적 파생금융거래전략을 심의·검토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기준을 정비하는 등 환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투자자산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회사는 내규 「대체투자운용기준」에 따라 대체투자 자산을 투자유형 및 투자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위험요인에 대한 분기별·반기별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체투자 자산 전건에 대한 사후점검 결과를 반기별로 투자전략심의위원회에 보고하면서 반기 종료 후 3개월을 경과하여 보고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등 대체투자 위험에 대한 적시 대응체계가 미흡하였고,

분기별 사후점검 대상에 '정상' 분류 자산이 제외되어 있고, 대체투자 세부 자산군*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등 수시모니터링 업무가 소홀하여 잠재 리스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우므로

* 호텔, NPL, 상업용 부동산, 공항·항만 등

앞으로 대체투자 자산 사후점검 결과에 대한 투자전략심의위원회 보고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분기별 사후점검 대상을 확대하여 개별 자산의 특성 등을 고려한 잠재적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관련 실시 요건, 자산별 위험 요인 설정 등을 구체화·정교화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